「자유적립예금」상품설명서

- 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 : 「자유적립예금」

■ 상품특징 : 입금금액, 납입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하는 상품

2 기래 조건

□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(2025.10.01.기준)

	(2025.10.01.기순)							
구 분	분	내 용						
예금고	무	• 자유적립예금						
가입다	내상	• 제한없음						
가입방법		• 영업점, 인터넷 뱅킹, 모바일 병	뱅킹(S	B톡톡+, i-Ba	ank)			
해지방법		• 영업점, 인터넷 뱅킹, 모바일 뱅킹(SB톡톡+, i-Bank)						
가입금액		• 1,000원 이상 자유로이 납입						
가입기	간	• 3개월 ~ 36개월						
이자지급시기		•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				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</u>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						
제한 사항		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% 이내로 가능)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변동금리 						
	기본	• 매회 납입별로 납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실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율 적용						
		계약기간		고시금리	연평균수익율	비고		
	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	2.00%	-			
		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		2.40%	-			
이자율		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		2.65%	-	세전		
-1.15		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		2.20%	-			
		36개월		2.00%	-			
		•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						
	만기	경과기간		이 율				
	후	1개월 이내	약정이율고	과 만기일 현재 고서	시이율 중 낮은이율			
		1개월 초과 보통예금 이율 적용						

구 분	내 용						
수익률	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						
The	*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						
게이네 쉐다	• 영업점 창구에서 해지 가능, 인터넷뱅킹 해지 가능, 모바일뱅킹 해지 가능						
계약의 해지	(인터넷/모바일 가입상품 창구 해지 시 수수료 발생합니다.)						
	• 1개월 미만 :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						
	• 1개월 이상 : 약정이율 × 차등률 [단, 최저금리 : 약정이율 X 50%]						
	예치기간 이 율 비 고						
	1개월 미만 연 0.4% 보통예금 이율						
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 약정이율 × 50%						
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 약정이율 × 52% 약정이율의						
	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× 55% 50%로 최저 금리 설정						
	24개월 이상 약정이율 × 70%						
ᄌᆫᆌᅱ	• 계산방법<예시>						
중도해지 이유	← 약정이율						
미계사바出							
및 계산방법							
	약정이율x70%						
	약정이율x60% 약정이율x50%						
	약정이율x52% 약정이율x55%						
	보통예금 금리 약정이율x50%						
계약일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~ 3개월 이상~ 6개월 이상~ 12개월 이상~ 24개월 이상							
	3개월미만 6개월미만 12개월미만 24개월미만 ※ 가입기간이 "1개월 미만"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이율의 50% 지급이 어려울 수						
	있으며,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임. 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 에 금융소비자						
위법계약	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						
해지권	해지권 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						
	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						
	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						
	•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						
	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였아 하며 영란이 모저 범의 및 바벌 등은 자성하였아 하니다						
TI 크 어크니	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						
자료열람	•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						
요구권	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						
	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고추용해요 버려 꿰고지의 이외치해 열었다마의 치해 들어 사용기 있는 경우 이론						
	•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						
	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					
	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						
	•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						
세제혜택	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						
	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						
	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						
	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						

구 분	내 용
계약의 분할	• 불가
자동재예치	• 불가
연계·제휴 서비스	해당사항 없음

3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

-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: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 (1522-79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·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×	계약체결	저	0121101	내용읔	<i>반드시</i>	확인하시고	서명(날	인)하시기	바란니다
/·\	* 7 * 2		~ / -// -//	-11 O Z	<u> </u>	7 L 7 7 1	*10C=		

- ① 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,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충도해지하는 경우,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,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?
 - □ 예 / □ 아니오 ☞ "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" 항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
- ❷ 본인은 IBK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			고객명 :	(서명 <i>/</i> 인
20	•	•	∸ ¬ o ·	(**)

◉ 금융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
압류	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
합규	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
기업규	확보하는 일
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
지기선정	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
질권설정	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
	설정하는 일
경과기간	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
8백기년	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